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입 법 예 고

고양시 공고 제2025-2216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고양시 공고 제2025-2219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3
고양시 공고 제2025-2220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8
고양시 공고 제2025-2221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5
고양시 공고 제2025-2226호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7
고양시 공고 제2025-2232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8
고양시 공고 제2025-2233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6
고양시 공고 제2025-2235호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90
고양시 공고 제2025-2242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4
고양시 공고 제2025-2245호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08
고양시 공고 제2025-2247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8

고양시 공고 제2025-2216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 부설주차장의 설치목적 및 성격에 부합하도록 주차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주차요금의 면제 기준 정비 및 감경 대상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차요금의 면제 기준을 정비하고, 감경 대상을 신설함(안 제6조 및 제7조).
- 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별표 1).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0월 13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주차교통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

- 전 화: 주차교통과 주차정책팀(031-8075-2921)

- 팩 스: 031-8075-492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자동차에”를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고”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본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장애인 등록증”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본문 중 “2세 환자”를 “2세환자가 탑승한 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관할 보훈관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경우에는 최초 12시간까지의 주차요

금에 대해서 전액 면제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포함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탑승한 자동차.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주차요금의 감면)”을 “(주차요금의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발행”을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탑승하고 임산부 차량 표지를 제시한 자동차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탑승한 자동차.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

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발급”을 “발행”으로 “감면”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경우에”로, “이용자에 한하여”를 “이용자에게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를 “고양시”로, “4인 이상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를 “4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발급할”을 “발행할”으로, “발급대장”을 “발행대장”으로 한다.

3. 제6조제1호의 자동차 중 정기주차권을 신청한 경우(고양종합운동장의 주차장에 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발급한”을 “발행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를 “고양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의거”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찾고자 할”을 “인수할”로, “제2조”를 “제4조”로 한다.

제16조 중 “유료주차장내에서”를 “유료주차장 내에서”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발급”을 각각 “발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주차교통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주차교통과장 유 진 상
	팀 장 성 명	주차정책팀장 김 기 호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박 선 민 (031-8075-2921)

[별표 1]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 2026년 주차요금

구 분		주 차 요 금
시·구청 부설주차장	공 통	최초 60분(1구획)이내 무료 5분 초과 시마다 19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3,000원으로 한다.
고양어울림누리 , 고양아람누리 부설주차장	평 상 시	60분(1구획)에 기본요금 1,000원. 5분 초과 시마다 19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3,000원으로 한다.
	행 사 시	주차 1구획당 2,200원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평 상 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노외주차장 2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 사 시	주차 1구획당 2,200원
고양시 도시공원 (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	평 상 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 사 시	주차 1구획당 2,200원
행주산성 부설주차장	공 통	주차 1구획당 2,200원
그 밖의 부설주차장	공 통	교통정책상 필요시 시청부설주차장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 비고: ‘행사 시’라 함은 시, 구청과 관리부서에서 인정하는 행사를 말한다.

○ 2027년 주차요금

구 분		주 차 요 금
시·구청 부설주차장	공 통	최초 60분(1구획)이내 무료. 5분 초과 시마다 21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3,000원으로 한다.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부설주차장	평상시	60분(1구획)에 기본요금 1,000원. 5분 초과 시마다 21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3,000원으로 한다.
	행사 시	주차 1구획당 2,400원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평상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노외주차장 2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사 시	주차 1구획당 2,400원
고양시 도시공원 (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	평상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사 시	주차 1구획당 2,400원
행주산성 부설주차장	공 통	주차 1구획당 2,400원
그 밖의 부설주차장	공 통	교통정책상 필요시 시청부설주차장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 비고: ‘행사 시’ 라 함은 시, 구청과 관리부서에서 인정하는 행사를 말한다.

○ 2028년 주차요금

구 분		주 차 요 금
시·구청 부설주차장	공 통	최초 60분(1구획)이내 무료. 5분 초과 시마다 23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3,000원으로 한다.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부설주차장	평상시	60분(1구획)에 기본요금 1,000원. 5분 초과 시마다 23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3,000원으로 한다.
	행사 시	주차 1구획당 2,600원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평상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노외주차장 2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사 시	주차 1구획당 2,600원
고양시 도시공원 (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	평상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사 시	주차 1구획당 2,600원
행주산성 부설주차장	공 통	주차 1구획당 2,600원
그 밖의 부설주차장	공 통	교통정책상 필요시 시청부설주차장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 비고: ‘행사 시’ 라 함은 시, 구청과 관리부서에서 인정하는 행사를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주차요금) ① (생략)	제4조(주차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u>감안하여</u> 주차시간에 따른 할증 또는 할인하는 방식으로 주차요금의 상한선 내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 ----- ----- 고려하여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u><단서 신설></u>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 ----- ----- ----- 다만, <u>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경우에는 최초 1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에 대해서 전액 면제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포함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u>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12. -----

현행	개정안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국가유공자</u>.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u>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자동차에</u>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u>한한다</u>. 1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다만,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u>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고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u>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u>한정한다</u>.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u>2세 환자</u>. 다만, <u>관할 보건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u>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u>한정한다</u>. 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 <u>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u> -----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고 ----- -----한정한다-. 13.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장애인등록증----- -----. 14. ----- -----2세 환자가 탑승한 자동차 --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고-----. 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현행	개정안
<u>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u> 를 제시한 자동차 8.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 에서 <u>발행</u>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자동차 9. (생략) <u><신설></u> <u><신설></u> 제8조(정기주차권 발행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정기주차권 발행비 율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약자 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자녀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통학시	<u>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u>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발급한 증명자료----- 8. ----- ----- 발급----- ----- 9. (현행과 같음)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임신부가 탑승하 고 임신부 차량 표지를 제시 한 자동차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탑 승한 자동차. 다만, 국가보훈 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 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정기주차권 발행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현행	개정안
키는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정기주차권은 포함하지 않으며, 주차요금은 제4조에서 정한 정기주차요금의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u>감면</u>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정기주차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에게</u> 발행하되, 주차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주차권 <u>이용자에 한하여</u>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1. <u>시</u>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각 실과별 필수직원 1명, 소속 직원의 승용차함께타기 참여차량으로 <u>4인 이상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u> 2. (생략) 3. <u>종합운동장의 주차장에 한하여 제6조제1항의 범위내에서 신청한 차량</u> 4. <u>기타</u>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u>발행</u> ----- ----- ----- ----- ----- <u>감경</u>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경우에</u> ----- ----- <u>이용자에게만</u> -----. 1. <u>고양시</u> ----- ----- ----- ----- -- <u>4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u> 2. (현행과 같음) 3. <u>제6조제1호의 자동차 중 정기주차권을 신청한 경우(고양종합운동장의 주차장에 한정한다)</u> 4. <u>그 밖에</u> ----- <u>인정하는 경우</u>

현행	개정안
⑥ 정기주차권 및 제6조에 따른 무료주차권을 <u>발급</u>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권 <u>발급대장</u>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정기주차요금은 정기주차권을 <u>발급</u>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이후에 발급 받는 경우 이용하는 날짜에 따라 정기주차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 제14조(주차장 단체사용) ① <u>시</u> 주관 또는 공공시설의 행사에 의해, 사전에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개시 24시간 전에 관리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차장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5조(무단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특별한	⑥ ----- ----- <u>발행</u>할 ----- -----<u>발행대장</u>----- -----.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발행</u>한----- ----- ----- ----- ----- 제14조(주차장 단체사용) ① <u>고양시</u>-----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무단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① -----

현행	개정안
<u>사유없이</u>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주차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u>의거</u> 무단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u>당해</u>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 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 차량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u>찾고자 할</u> 때에는 <u>제2조</u>에 따른 주차요금과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의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u>유료주차장내에서</u>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감	<u>사유 없이</u>----- ----- ----- <u>따라</u> ----- ----- ----- <u>해당</u> ----- ----- -----. ② ----- ----- ----- ----- <u>인수할</u> ----- ----- <u>제4조</u> ----- ----- ----- ----- -----. 제16조(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u>유료주차장내에서</u> ----- ----- ----- ----- ----- -----. 제22조(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감

현행	개정안
독) ① (생략) ②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르며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u>필요</u> 시 위탁자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필요</u> 시 ----- -----.

현행			개정안		
[별표 1]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 2026년 주차요금		
구분		주차요금	구분		주차요금
시·구청 부설주차장	공통	60분(1구획)에 기본요금 1,000원. 5분 초과시마다 17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시·구청 부설주차장	공통	최초 60분(1구획)이내 무료. 5분 초과 시마다 19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3,000원으로 한다.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부설주차장	평상시	60분(1구획)에 기본요금 1,000원. 5분 초과시마다 17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부설주차장	평상시	60분(1구획)에 기본요금 1,000원. 5분 초과 시마다 19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3,000원으로 한다.
	행사시	주차 1구획당 2,000원		행사시	주차 1구획당 2,200원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평상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한 노상4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평상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노외주차장 2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사시	주차 1구획당 2,000원		행사시	주차 1구획당 2,200원
고양시 도시공원 (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	평상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별표 1에 의한 노상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고양시 도시공원 (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	평상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사시	주차 1구획당 2,000원		행사시	주차 1구획당 2,200원
행주산성부설주차장	공통	주차 1구획당 2,000원	행주산성 부설주차장	공통	주차 1구획당 2,200원
기타 부설주차장	공통	교통정책상 필요시 시청부설주차장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그 밖의 부설주차장	공통	교통정책상 필요시 시청부설주차장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비고 1. 행사시라 함은 시, 구청과 관리부서에서 인정하는 행사를 말한다.			※ 비고: '행사 시'라 함은 시, 구청과 관리부서에서 인정하는 행사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 2027년 주차요금	
	구분	주차요금
	시·구청 부설주차장	공통
		최초 60분(1구획)이내 무료, 5분 초과 시마다 21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3,000원으로 한다.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부설주차장	평상시
		60분(1구획)에 기본요금 1,000원, 5분 초과 시마다 21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3,000원으로 한다.
		행사시
		주차 1구획당 2,400원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평상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노외주차장 2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사시
		주차 1구획당 2,400원
	고양시 도시공원 (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	평상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사시
		주차 1구획당 2,400원
	행주산성 부설주차장	공통
		주차 1구획당 2,400원
	그 밖의 부설주차장	공통
		교통정책상 필요시 시청부설주차장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 비고: ‘행사시’라 함은 시, 구청과 관리부서에서 인정하는 행사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 2028년 주차요금	
	구분	주차요금
	시·구청 부설주차장	공통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부설주차장	평상시
		행사시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평상시
		행사시
	고양시 도시공원 (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	평상시
		행사시
	행주산성 부설주차장	공통
	그 밖의 부설주차장	공통
	※ 비고: '행사시'라 함은 시, 구청과 관리부서에서 인정하는 행사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무료·정기주차권 발급대장							무료·정기주차권 발행대장						
순번	소속	성명	차량번호	수량	발급일자	비고	순번	소속	성명	차량번호	수량	발행일자	비고

고양시 공고 제2025 - 2219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성사1동행정복지센터가 주교우체국에서 창조혁신캠퍼스 성사 내로 이전함에 따라 성사1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3”에서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15”로 변경함(안 별표).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031-8075-2484)

- 팩 스: 031-8075-496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란 중 “호국로 793”을 “고양대로 141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주민자치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주민자치과장 주 은 주
	팀 장 성 명	자치행정팀장 이 충 섭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오 민 욱 (031-8075-248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별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기관명	소재지	기관명	소재지
⋮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	(생략)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3 (생략)	⋮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	(현행과 같음) ----- 고양대로 1415 (현행과 같음)

고양시 공고 제2025-2220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하수도 사용료 통합 납부 고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함(안 제35조제1항제7호 및 제17호).
 - 나. 하수도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 규정을 정비함(안 제36조제3항).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0월 13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하수행정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하수행정과 하수도요금TF팀(031-8075-4589)

- 팩 스: 031-8075-494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시에서”를 “고양시에서”로 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시장이 공익 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36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
후 이의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하수행정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하수행정과장 김 동 욱
	팀 장 성 명	하수도요금TF팀장 차 미 량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김 호 주 (031-8075-4589)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u>시에서</u> 설치한 하수 및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밖에 운영관리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 <u>고양시에서</u>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감면 등) ① (생략)	제35조(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노인복지법」에 따른 <u>노인 주거복지시설</u>	7. ----- <u>노인 복지시설</u>
8. ~ 16. (생략)	8. ~ 16. (현행과 같음)
17. <u>공익적 목적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u>	17. <u>시장이 공익 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u>
18. (생략)	1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이의신청) ①·② (생략)	제36조(이의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u>	

고양시 공고 제2025-2221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공공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하수도 사용료 통합 납부 고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함(안 제14조제1항제7호).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0월 13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하수행정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하수행정과 하수도요금TF팀(031-8075-4589)

- 팩 스: 031-8075-494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규칙 제 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수량 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적용구분(업종)의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

제3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 취하신청을 되돌려 줄”을 “공사 취소신청을 반려할”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하신청서”를 “취소신청서”로, “이내”를 “이내에”로, “취하”를 “취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감면 :”을 각각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20감면 :”을 “20 감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감면 :”을 “감면:”으로, “경우”를 “ 경우(감면하고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후 정상 사용량 요금과 합산하여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이내 신청하여야하며”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로, “해당월”을 “해당 월”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불받고자 하는”을 “환불을 받으려는”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하수행정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하수행정과장 김 동 욱
	팀 장 성 명	하수도요금TF팀장 차 미 량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김 호 주 (031-8075-458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생략)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u>[별지 제1호서식]</u>	1.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 <u>별지 제1호서식</u>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u>[별지 제2호서식]</u>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u>별지 제2호서식</u>
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수량 신고 : <u>[별지 제3호서식]</u>	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수량 신고: <u>별지 제3호서식</u>
4. 하수도 사용 적용구분(업종)의 변경신고 : <u>[별지 제4호서식]</u>	4. 하수도 사용 적용구분(업종)의 변경신고: <u>별지 제4호서식</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u>시장</u> 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③ ----- ----- ----- <u>고</u> <u>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5호서식]</u> 의 공공하수도 일시사	제3조(일시사용 신고) ① ----- ----- <u>사용하려는</u> ---- <u>별지 제5호서식</u> <u>식</u> -----

현행	개정안
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8조(공사신청의 취소)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공사 취하신청을 되돌려 줄 수 있다.</u> ③ 시장은 공사 <u>취하신청서</u>를 접수한 날부터 7일 <u>이내</u> 제2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 ----- -----<u>하려는</u> ----- <u>별지 제10호서식</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공사신청의 취소) ① ----- ----- ----- ----- <u>별지 제11호서식</u>----- ----- -----. ② ----- ----- ----- ----- -----<u>공사 취소신청을 반려할</u> -----. ③ -----<u>취소신청서</u>----- ----- <u>이내에</u> -

현행	개정안
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으면 <u>취하</u>하는 때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u>별지 제12호서식</u>」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③ (생략) 제13조(가산금 및 납입독촉 등) ①·④ (생략) ⑤ 시장이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사용료는 수도사용료 고지서, 수수료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각각 독촉장을 발부하고, 점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은 「<u>별지 제13호서식</u>」에 따라 발부한다. 제14조(감면) ① (생략) 1. 전액<u>감면</u> :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2. 차이수량에 대하여 <u>감면</u> :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	-----<u>취</u>하 <u>소</u>----- -----. ① ----- ----- ----- -----<u>별지 제12호서식</u>----- <u>식</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가산금 및 납입독촉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별지 제13호서식</u>----- -----. 제14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전액<u>감면</u>: ----- ----- 2. ----- <u>감면</u>: ----- -----

현행	개정안
어 하수배출 차이수량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 -----
3.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 금 <u>감면</u> : 조례 제35조제1항제 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경 우	3. ----- -- <u>감면</u> : ----- ----- ----- --
4. 빗물이용 및 중수도 사용량 에 해당하는 하수도요금의 10 0분의 90 <u>감면</u> : 조례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4. ----- ----- ----- <u>감면</u> : ----- -----
5.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 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요금 의 100분의 90 <u>감면</u> : 조례 제 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5. ----- ----- ----- <u>감면</u> : ----- -----
6. 하수도사용량의 100분의 20 <u>감면</u> : 조례 제35조제1항제14 호에 따른 경우	6. ----- 20 <u>감면</u> : ----- -----
7. 누수된 양의 2분의 1 <u>감면</u> :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 유로 인한 것이 아닌 불출수 등으로 상수도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7. ----- <u>감면</u> : - ----- ----- ----- 경우(감면하고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별 1 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현행	개정안
8. (생략) ② (생략) ③ 조례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로 인한 감면은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누수가 확인된 경우 총사용량은 부과 해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징수한다. ④·⑥ (생략) 제15조(이의신청) ①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생략) 제16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u>후 정상 사용량 요금과 합산하여 부과한다)</u>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u>받으려</u> <u>는</u>-----<u>별지 제14호</u> <u>서식</u> ----- ----- ----- -----<u>이내에 신청</u> <u>하여야 하며</u>----- -----<u>해당 월</u>----- -----. ④·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의신청) ① ----- ----- ----- -----<u>별지</u> <u>제15호서식</u>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현행과 같음) ② ----- -----<u>별지</u>

현행	개정안
<u>제16호서식</u>]에 따라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제16호서식</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환불</u> 받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17호서식]</u>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u>환불</u>을 받으려는-----<u>별지 제17호서식</u> ----- <u>한다.</u>

고양시 공고 제2025-2226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 고양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이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고양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장).
- 나. 지도판매대행사 영업 종료에 따른 상위법 개정으로 공간정보 자료에 대한 판매 조문을 정비함(안 제14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0월 13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토지정보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3층(주교동, 현대빌딩)

- 전 화: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031-8075-3008)

- 팩 스: 031-8075-493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를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12. “도로기반시설물도”란 제3호의 도로기반시설물을 1천분의 1의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제2장(제3조, 제4조, 제5조)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7조제1항 중 “공간정보 전산실”을 “전산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수수료 징수 및 판매)”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수하거나 판매할”을 “징수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적용하여 징수하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한 지도판매대행자 또는 국토지리정보유통망을 활용하여 지도를 판매할 수 있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토지정보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토지정보과장 안 수 민
	팀 장 성 명	공간정보팀장 박 경 모
	담 당 자 성명·연락처	오 다 운 (031-8075-3008)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 제2조(준용도로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에 따른 고양시(이하 “시”란 한다) 구역 안의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3. ----- ----- ----- -----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 ----- -----.
4. ~ 11. (생략)	4. ~ 11. (현행과 같음)
12. “도로기반시설물도”란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1,000분의 1 수치지도를 기초로 하여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2. “도로기반시설물도”란 제3호의 도로기반시설물을 1천분의 1의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13.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이란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유통망을 말하며, 이는 공간정보의 생산자·관리자 및 사용	<삭제>

현행	개정안
<u>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의미한다.</u> <u>제2장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u>	<u><삭 제></u>
<u>회</u> <u>제3조(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u>1.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 관리방안</u> <u>2. 시스템관련 사업추진계획</u> <u>3.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u> <u>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 <u>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u>	<u><삭 제></u>

현행	개정안
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간정보업무 전담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의 관리책임자 2.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또는 교수 3.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하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	<삭 제>

현행	개정안
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담당업무 지정) ① (생략) 1. 공간정보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2. ~ 7. (생략) ② (생략) 제7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주전산기는 <u>공간정보 전산실</u>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u>시장</u>은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운영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13조(자료의 제공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	제6조(담당업무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u>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u> 수립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 <u>전산실</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u>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자료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현행	개정안
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④ (생략) 제14조(수수료 징수 및 판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제공하는 공간정보 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u>징수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u>적용하여 징수하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한 지도판매대행자 또는 국토지리정보유통망을 활용하여 지도를 판매할 수 있다.</u> ③·④ (생략) 제16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u>제23조제3항</u>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	----- ----- ----- <u><단서 삭제></u>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수료) ① ----- ----- ----- <u>징수할</u> -----. ② ----- ----- ----- <u>적용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수수료의 감면) ----- ----- ----- <u>제23조제6항</u>----- -----

현행	개정안
상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5. (생략)	----- -----. 1. ~ 5. (현행과 같음)

고양시 공고 제2025-2232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원 중단 이후에도 요건을 다시 충족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재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요건 중 ‘최초 신청 시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를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4조).

다. 신청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는 직전년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여성가족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주교동, 충헌빌딩 4층)

- 전 화: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031-8075-3328)

- 팩 스: 031-8075-491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횟수는 출산가구당 최대 4회로 한정하며,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한이 지난 경우 남은 지원횟수는 자동 소멸한다.

③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당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을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으로, “다음 각 호의”를 “매 신청 시마다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금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전년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7조제2항후단의 개정 규정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여성가족과장 장 은 옥
	팀 장 성 명	출산지원팀장 강 은 정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강 수 민 (031-8075-332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u>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가구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조례는</u> ----- ----- ----- ----- ----- -----.
제2조(정의) (생 략) 1. “출산가구”란 자녀를 출산하거나 <u>「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u> 아동을 입양한 가구를 말한다. 2. 3.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u>「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u> <u>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u> <u>에 따라</u> 아동을 입양한-----. 2.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생 략) 1. <u>직전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다만, 최초 신청 시에만 적용한다.</u> 2. ~ 5. (생 략)	제4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u>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u>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금 및 지원횟수) ① (생 략) ② <u>지원횟수는 출산가구당 최대 4회로 한다.</u>	제6조(지원금 및 지원횟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원횟수는 출산가구당 최대 4회로 한정하며,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한이 지난 경우 남</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7조(지원신청) 신청인이 출산가 구 전월세자금 <u>대출이자를 지원 받으려는</u> 경우에는 <u>다음 각 호 의</u>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 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u><신 설></u>	<u>은 지원횟수는 자동 소멸한다.</u> <u>③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가 들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당 자 녀 1명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u> 제7조(지원신청) ① ----- ----- <u>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u> ----- 매 신청 시마 다 <u>다음 각 호의</u> ----- -----. 1. 2. (현행과 같음) <u>② 지원금은 출생 자녀 또는 입 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 터 4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u> <u>이 경우 직전년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u>

고양시 공고 제2025-2233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및 조정기한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신청정보를 간소화하도록 정비하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는 청소 관련 종사자의 근무(휴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 대상 중 ‘1994년도 4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 관련 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나. 기존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사항을 조정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을 확대함(안 제15조제1항).

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상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분쟁조정안을 작성·통보하도록 조정기한을 단축함(안 제24조제1항).

라.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정비함(안 별표).

마. 분쟁조정 신청 시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정보는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신청 정보를 간소화함(안 별지 제4호서식).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0월 13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주택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75-3120)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031-8075-3167)

- 팩 스: 031-8075-493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비용”을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일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중 “이하인”을 “이하이거나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인”으로 한다.

3. 경비원 및 청소 관련 종사자의 근무(휴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4. 공동주택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공사에 드는 비용

제6조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위원은”을 “위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업무 담당 실장·국장 및 부서장

-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심사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담당 팀장”을 “업무 담당”으로,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을 “관련 분야 업무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요 사업비”를 “사업비”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소요되는”을 “걸리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심사위원회에 부의할”을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위해”를 “위해(危害)”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을 “심의·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

다.

-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8조제3항 중 “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소요되는”을 각각 “드는”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심의·조정하거나 조정신청을 상정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주 택 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주 택 과 장 이 성 실
	팀 장 성 명	공동주택관리팀장 지 옥 용 공동주택감사팀장 이 상 원
	담 당 자 성명·연락처	신 다 은 (031-8075-3120) 김 현 립 (031-8075-3167)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2. 우수관·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수관·오수관 제외)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1천만원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하 지원	1천만원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하 지원	2천만원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 지원	1,000세대 미만	2천만원	
	1,000세대 이상	3천만원	

6.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1,000세대 이상	2천만원	

7.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2천만원	

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대상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 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90퍼센트 이하	세대당 60만원 이하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제16호의 노후주택 중 같은 조례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0퍼센트 이하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	30퍼센트 이하		

9. 공동주택의 변압기 교체에 드는 비용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1,000세대 이상	2천만원	

10. 저수조의 유지·보수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1,000세대 미만	4천만원	
	1,000세대 이상	5천만원	

11. 옥외 지상주차장의 증설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12.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20퍼센트 이하 지원	1억5천만원(1대당, 1천만원)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후 시설의 교체·보수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4천만원	

14.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지원대상	최대 지원금액	비 고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세대당 700원 이하 및 현장지원수수료 440,000원 이하	다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가능

15.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지원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지원항목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공용부 보수·교체 공사 또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2,000세대 미만	2천만원	
	3,000세대 미만	2천5백만원	

16. 경비원 및 청소 관련 종사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 지원	1천5백만원	

17. 공동주택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2천5백만원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별표의 범위에서 고양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조금 지원금액은 시 지원율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는 최대 지원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금은 공사비 등의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에 대하여만 지원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 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의 최대지원금액은 공사종류별 합계액으로 한다.
5. 제8호에 대한 지원 단지에 전용면적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제17호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설비를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u>비용</u>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일부</u>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지원) ① ----- ----- ----- ----- <u>비용</u>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 <u>일부</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생략)	제4조(지원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공동주택의 변압기 교체에 <u>소요되는 비용</u>	9. ----- <u>드는</u> -----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u>노후 소화설비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u>	<u><삭 제></u>
14. <u>경비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u>	<u><삭 제></u>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u>소요되는 비용</u> 2. (생략) <u><신설></u> <u><신설></u> ③ (생략) ④ (생략)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한 공사 종류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보조금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생략)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u>한다. ③ (생략)	1. ----- 드는 ----- 2. (현행과 같음) 3. <u>경비원 및 청소 관련 종사자의 근무(휴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u> 4. <u>공동주택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공사에 드는 비용</u>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이하이거나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인 -----. 2.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호선(互選)</u>-----.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 고양시 예산 및 주택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 4. (생략) ④ (생략)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u>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1. 2. (생략)	1. 주택업무 담당 실장·국장 및 부서장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u>개</u>의(開議)----- -----. ⑥ ----- <u>위원</u>에게 ----- ----- ----- ----- ----- ----- -----.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심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u> ② (생략) ③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은 스스로 <u>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회피</u>해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8조(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실무 검토반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며 주관부서 <u>담당 팀장</u>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u>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u>을 구성원으로 한다. 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3. ----- -----<u>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심사위원회</u>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업무 담당</u> ----- ----- ----- <u>관련 분야 업무 담당</u> ----- ----- ----- -----.

현행	개정안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금액 정산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검토를 받거나 <u>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u>, 이에 따른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u>위해</u>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① <u>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u> 1. ~ 9.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u> 1. · 2. (생략) 3. <u>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u>	③ ----- ----- ----- <u>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u> ----- ----- -----. 제11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위해(危害)</u>----- ----- -----. 제15조(기능) ① <u>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u> 1. ~ 9. (현행과 같음) ② ----- ----- <u>심의·조정</u> ----- -----.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u> 제16조(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생략) 1. 주택업무 담당 <u>국장</u> 2. ~ 5. (생략) ④·⑤ (생략) <u>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팀장이 된다.</u>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 ~ ② (생략) ③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u>위원회</u>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4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상정받은 날부터 <u>60일</u>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	제16조(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u>실장·국장</u> 2. ~ 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u>⑥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u>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조정위원회</u> -----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처리기간) ① ----- ----- <u>30일</u>-----

현행	개정안
지 제5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조정비용) ① (생략)	제32조(조정비용) ① (현행과 같음)
1. 감정·진단·시험등에 <u>소요되는</u> 비용	1. ----- <u>드는</u> -----
2. 검사·조사에 <u>소요되는</u> 비용	2. ----- <u>드는</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table><tr><th rowspan="2">시 지원율</th><th colspan="2">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세대수</th><th>최대 지원금액</th></tr><tr><td rowspan="2">총 사업비의 50% 지원</td><td>1000세대 미만</td><td>3천만원</td><td></td></tr><tr><td>1000세대 이상</td><td>4천만원</td><td></td></tr></table> 2. 우수관·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수관·오수관 제외) <table><tr><th>시 지원율</th><th>최대 지원금액</th><th>비고</th></tr><tr><td>총 사업비의 50% 지원</td><td>1천만원</td><td></td></tr></table>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공사 <table><tr><th>시 지원율</th><th>최대 지원금액</th><th>비고</th></tr><tr><td>총 사업비의 80% 지원</td><td>1천만원</td><td></td></tr></table>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table><tr><th>시 지원율</th><th>최대 지원금액</th><th>비고</th></tr><tr><td>총 사업비의 80% 지원</td><td>2천만원</td><td></td></tr></table>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table><tr><th rowspan="2">시 지원율</th><th colspan="2">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세대수</th><th>최대 지원금액</th></tr><tr><td rowspan="2">총 사업비의 70% 지원</td><td>1000세대 미만</td><td>2천만원</td><td></td></tr><tr><td>1000세대 이상</td><td>3천만원</td><td></td></tr></table>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1천만원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1천만원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2천만원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 지원	1000세대 미만	2천만원		1000세대 이상	3천만원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table><tr><th rowspan="2">시 지원율</th><th colspan="2">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세대수</th><th>최대 지원금액</th></tr><tr><td rowspan="2">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td><td>1,000세대 미만</td><td>3천만원</td><td></td></tr><tr><td>1,000세대 이상</td><td>4천만원</td><td></td></tr></table> 2. 우수관·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수관·오수관 제외) <table><tr><th>시 지원율</th><th>최대 지원금액</th><th>비고</th></tr><tr><td>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td><td>1천만원</td><td></td></tr></table>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공사 <table><tr><th>시 지원율</th><th>최대 지원금액</th><th>비고</th></tr><tr><td>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하 지원</td><td>1천만원</td><td></td></tr></table>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table><tr><th>시 지원율</th><th>최대 지원금액</th><th>비고</th></tr><tr><td>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하 지원</td><td>2천만원</td><td></td></tr></table>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table><tr><th rowspan="2">시 지원율</th><th colspan="2">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세대수</th><th>최대 지원금액</th></tr><tr><td rowspan="2">총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 지원</td><td>1,000세대 미만</td><td>2천만원</td><td></td></tr><tr><td>1,000세대 이상</td><td>3천만원</td><td></td></tr></table>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1천만원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하 지원	1천만원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하 지원	2천만원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 지원	1,000세대 미만	2천만원		1,000세대 이상	3천만원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1천만원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1천만원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2천만원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 지원	1000세대 미만	2천만원																																																																																									
	1000세대 이상	3천만원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1천만원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하 지원	1천만원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하 지원	2천만원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 지원	1,000세대 미만	2천만원																																																																																									
	1,000세대 이상	3천만원																																																																																									

현행				개정안			
6. 공동주택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6. 공동주택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1000세대 이상	2천만원			1,000세대 이상	2천만원	
7.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7.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2천만원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2천만원		
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대상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지원대상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전용면적 60㎡ 이하	90%	세대당 60만원 이하	<u>1994년도 4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u>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90퍼센트 이하	세대당 60만원 이하	<u>「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제6호의 노후주택 중 같은 조례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u>
전용면적 85㎡ 이하	8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0퍼센트 이하		
전용면적 130㎡ 이하	30%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	30퍼센트 이하		
9. 공동주택의 변압기 교체에 드는 비용				9. 공동주택의 변압기 교체에 드는 비용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1000세대 이상	2천만원			1,000세대 이상	2천만원	
10. 저수조의 유지·보수 및 교체 공사				10. 저수조의 유지·보수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4천만원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1,000세대 미만	4천만원	
	1000세대 이상	5천만원			1,000세대 이상	5천만원	

현행			
11. 옥외 지상주차장의 증설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12.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20% 지원	1억5천만원(1대당, 1천만원)		
13. 노후 소화설비 교체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3천만원		
14. 경비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70% 지원	1천5백만원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후 시설의 교체·보수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4천만원		
16.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지원대상	최대 지원금액	비 고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세대당 700원 이하 및 현장지원수수료 440,000원 이하	다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가능	

개정안					
11. 옥외 지상주차장의 증설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12.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20퍼센트 이하 지원	1억5천만원(1대당, 1천만원)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후 시설의 교체·보수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지원	4천만원				
14.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지원대상	최대 지원금액	비 고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세대당 700원 이하 및 현장지원수수료 440,000원 이하	다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가능			
15.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지원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지원항목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공용부 보수·교체 공사 또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2,000세대 미만		2천만원	
지원	3,000세대 미만	2천5백만원			
16. 경비원 및 청소 관련 종사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 지원	1천5백만원				

현행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주소			신청인 (신청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 □여)	
	성명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연락처
피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신청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 □여)	
	성명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연락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조정 받으려는 사항			
분쟁발생사유				분쟁 발생 사유			
당사자간 협의 진행사항				당사자 간 협의 진행사항			
첨부서류				첨부서류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 작성 시 참고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는 선택하여 기재 가능하나,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항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공고 제2025-2235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제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고양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고양시 이자 지원사업 대상 범위보다 확대되어 조례 제정 이후 사업 시행 실적이 없는 실정이므로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평생교육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주교동)

- 전 화: 평생교육과 교육발전특구팀(031-8075-2275)

- 팩 스: 031-8075-492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평생교육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평생교육과장 박 상 희
	팀 장 성 명	교육발전특구팀장 이 준 희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손 정 원 (031-8075-2275)

고양시 공고 제2025-2242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2010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공원시설 사용료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현실화하고,
- 기능이 유사한 ‘고양시 도시공원위원회’와 ‘고양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능이 유사한 ‘고양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와 ‘고양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비함(안 제45조제5호).
- 나. 공원시설의 사용료의 부과 방식을 변경하는 등 사용기준 및 사용료를 정비함(안 별표 6).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0월 13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녹지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1

- 전 화: 녹지과 공원계획팀(031-8075-4388)

- 팩 스: 031-8075-495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파트너쉽”을 “파트너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19조제1호가목(1)부터 (5)까지를 각각 1)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를 각각 1)부터 3)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벌채하지”를 “나무를 베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전정”을 “가지치기”로 하고, 같은 호 아목(1) 및 (2)를 각각 1) 및 2)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고양시”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고양시”를 “시”로 한다.

제28조 단서 중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을 “베거나 훼손하는 등 그 밖의 처분 등을”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산림휴양공원 :”을 “산림휴양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로공원 :”을 “가로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생태공원 :”을 “도시생태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르신공원 :”을 “어르신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반려동물공원 :”을 “반려동물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습지공원 :”을 “습지공원:”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적제한”을 “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하기위하여”를 “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고양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고양시”를 “시”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저해할”을 “해칠”로 한다.

제4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심의

제46조제4항제3호 중 “고양시”를 “시”로 한다.

제52조의3 중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을 “공원녹지 업무 담당 사업 소장”으로 한다.

별표 6 중 영화·TV촬영 및 사진촬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기타시설”을 “그 밖의 시설”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사용시”를 “사용 시”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별	사용기준	사 용 료	가산금액
영화·TV촬영	2시간 이내	150,000원	30분 초과할 때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사진촬영	2시간 이내	30,000원	30분 초과할 때마다 6,000원을 가산한다.

3. 공원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소 관 부 서		녹지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녹지과장 김 평 순
	팀 장 성 명	공원계획팀장 정 미 정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박 유 라 (031-8075-4388)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녹화보급활동) ① (생략)	제11조(녹화보급활동)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u>파트너십</u> 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② ----- ----- ----- ----- ----- <u>파트너십</u>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녹화계약 대상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의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18조(녹화계약 대상지역)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u>새로이</u>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	4. ----- ----- ----- ----- ----- ----- <u>새로</u> -----

현행	개정안
역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녹화계약내용) (생략)	제19조(녹화계약내용)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u>벌채하지</u>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나. ----- ----- ----- ----- <u>나무를 베지</u> -----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u>범위</u>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 바. (생략) 사. <u>전정</u>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아. (생략) (1) (생략) (2) (생략) 제22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안)을 고양시보 또는 <u>고양시</u>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③ (생략) 제24조(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양시보 또는 <u>고양시</u> 인터넷 홈페이지에	6. ----- ----- ----- ----- <u>범위</u>-----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u>가지치기</u>----- ----- 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22조(주민의견 청취) ① ----- ----- ----- ----- <u>고양시</u>(이하 “시”라 한다)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계약체결의 공고) ----- ----- ----- ----- --- <u>시</u> -----

현행	개정안
공고한다. 제28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 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u>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u> 할 수 없다. 제29조(주제공원의 세분) (생략) 1. <u>산림휴양공원</u> : 산림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u>가로공원</u> :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u>도시생태공원</u> : 도시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u>어르신공원</u> : 노년층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5. <u>반려동물공원</u> :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제28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 ----- ----- ----- <u>베거나 훼손하는 등 그 밖의 처분 등을</u> -----. 제29조(주제공원의 세분) (현행과 같음) 1. <u>산림휴양공원</u>: ----- ----- ----- 2. <u>가로공원</u>: ----- ----- ----- 3. <u>도시생태공원</u>: ----- ----- ----- 4. <u>어르신공원</u>: ----- ----- ----- 5. <u>반려동물공원</u>: ----- ----- -----

현행	개정안
6. <u>습지공원</u> : 습지 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6. <u>습지공원</u> : ----- ----- -----
제31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생략)	제31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u>적재한</u> 자동차	2. ----- <u>실은</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영업행위를 <u>하기위하여</u> 공원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4. ----- <u>하기 위하여</u> ----- -----
제37조(점용료 면제) (생략)	제37조(점용료 면제)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고양시</u> 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u>시</u> ----- ----- -----
3. <u>고양시</u> 와 토지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점용하는 경우	3. <u>시</u> ----- ----- ----- -----
제42조(사용제한) (생략)	제42조(사용제한) (현행과 같음)
1. 공익을 <u>저해할</u>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 <u>해칠</u> ----- -----

현행	개정안
2. ~ 4. (생략) 제45조(설치 및 기능)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5조(설치 및 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4. 「 <u>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u> 」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심의
4. (생략) 제46조(구성) ① ~ ③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6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1. · 2. (생략) 3.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5급 이상 <u>고양시</u> 공무원	④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u>시</u> ----- -
4. (생략) 제52조의3(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른 권한을 <u>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장</u> 및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4. (현행과 같음) 제52조의3(권한의 위임) ----- ----- -- <u>공원녹지 업무 담당 사업소장</u> -----.

현행					개정안				
[별표 6]					[별표 6]				
공원시설의 사용료					공원시설의 사용료				
종 별		사용기준	사 용 료	가산금액	종 별		사용기준	사 용 료	가산금액
행사를 위한 광장의 사용료		1회/3시간	100,000원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50,000원을 가산한다.	행사를 위한 광장의 사용료		1회/3시간	100,000원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50,000원을 가산한다.
영화·TV촬영		주간1회/1일 야간1회/1일	150,000원 200,000원		영화·TV촬영		2시간 이내	150,000원	30분 초과할 때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사진촬영		1회/1일	10,000원	1일을 초과할 때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사진촬영		2시간 이내	30,000원	30분 초과할 때마다 6,000원을 가산한다.
노래하는 분수대	주분수대	1회/1시간	400,000원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400,000원을 가산한다.	노래하는 분수대	주분수대	1회/1시간	400,000원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400,000원을 가산한다.
	계단/바닥 분수대	1회/1시간	170,000원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170,000원을 가산한다.		계단/바닥 분수대	1회/1시간	170,000원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170,000원을 가산한다.
	음향시설	1회/1시간	50,000원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50,000원을 가산한다.		음향시설	1회/1시간	50,000원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50,000원을 가산한다.
기타시설		1회/3시간	30,000원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그 밖의 시설		1회/3시간	30,000원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비고					비고				
1. 노래하는 분수대 <u>사용시</u> 행사를 위하여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광장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노래하는 분수대 <u>사용 시</u> 행사를 위하여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광장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공원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징수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3. 공원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한다.				

고양시 공고 제2025 - 2245 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여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 조직개편 등에 따른 당연직 위원 수 변동을 고려하여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차후 불필요한 개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 위원회의 서면 의결 요건 규정 및 회의록 등의 비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의 경우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제3호).

- 나.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3항).
- 다. 위원회의 서면 의결 요건을 규정함(안 제25조제4항).
- 라. 위원회 회의록 등의 비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제5항).
- 마.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징계절차 시 공무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별표 3).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2025년 10월 13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법무담당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신관 B1층)
 - 전 화: 법무담당관 송무지원팀(031-8075-2365)
 - 팩 스: 031-8075-490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규칙 제 호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고양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를 “고양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작성·비치하여야”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부서장”을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쟁송”을 “쟁송(爭訟)”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가산하여”를 “더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작성 및 비치한다”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를 “고양시”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민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민·형사상”을 “민사·형사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고양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에 따른 고양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서장”을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명 포함”을 “소명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를 “고양시소송심의위원회”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 등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확정일로부터”를 “확정일부터”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정본 1부, 등본 2부”를 “정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결확정증명서 2부”를 “판결확정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본 각 2부”를 “사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

임장 2부”를 “위임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본) 2부”를 “사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기하되”를 “제기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비용회수 업무”를 “소송비용 회수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12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실·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을 “위촉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를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로, “종료 된”을 “종료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서장”을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장·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고문변호사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등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26조 중 “시”를 “고양시”로,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기여하는”을 “이바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송 사건”을 “소송사건”으로 한다.

별표 3 중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제출 받은”을 “제출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1호라목 및 마목”을 “제1호마목 및 바목”으로 한다.

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 3) 제1호라목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관련 서류,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적극행정
위원회 의견 자료 등

별지 제13호서식 중 앞 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법무담당관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법무담당관 박 천 재
	팀 장 성 명	송무지원팀장 이 후 영 규제개혁팀장 이 경 민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라 혜 영 (031-8075-2365) 김 미 화 (031-8075-2077)

[별지 제13호서식]

임 의 변 제 청 구 서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청구인 등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당사자명	구분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 구 금 액		
	원고명	인용액	인용액	원 금	이 자	합 계
	계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판결문正本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을 고양시가 지급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임의변제하는 것임에 불과함을 인정함.

※ 가집행선고부에 따른 임의변제의 경우 뒷면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고양시장(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u>시</u>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고양시</u> ----- ----- -----.
제2조(정의) (생략) 1. “소송사건”이란 고양시와 고양시장, <u>시</u> 소속 공무원 등(이하 “고양시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 9.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 <u>고양시</u> ----- ----- ----- ----- ----- -----. 2. ~ 9. (현행과 같음)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u>당해</u>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생략)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 -- <u>해당</u> ----- ----- -----.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 ④ (생략)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⑤ 소송총괄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송사건 접수대장을 <u>작성·비치하여야</u> 한다.	⑤ ----- ----- -- <u>작성하여 갖추 두어야</u> --.
제6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 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u>부서장을</u>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① ----- ----- -- <u>장</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소송비용) ①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u>의하여</u>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착수금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소송비용) ① ----- ----- ----- ----- <u>따라</u> ----- ----- ----- -----.
② 소송대리인이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u>쟁송</u> 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 <u>쟁송</u> <u>(爭訟)</u> ----- ----- -----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	③ -----

현행	개정안
금과 승소사례금에 <u>대하여</u> 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u>가산하여</u> 지급한다.	----- <u>대해서는</u> ----- ----- <u>더하여</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소송이 청구의 포기, 인낙, <u>기타</u>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다만, 화해·조정 은 제외한다.	2. ----- <u>그 밖의</u>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송총괄부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대장 을 <u>작성 및</u> 비치한다.	⑥ ----- ----- - <u>작성하여</u> 갖추 두어야 한다.
제14조(소속 공무원 소송비용 등 의 지원 및 환수) ① 소송총괄부 서의 장은 <u>신</u> 소속 공무원(전출 자 및 퇴직자를 <u>포함한다</u> .)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u>민사</u> 소 송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 과정 의 피의자가 된 경우 및 <u>민·형</u> <u>사상</u>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제14조(소속 공무원 소송비용 등 의 지원 및 환수) ① ----- ----- <u>고양시</u> ----- ----- <u>포함한다</u> ----- ----- ----- <u>민사소송</u> ----- ----- ----- <u>민사·형사</u> <u>상</u> ----- ----- --. <u>다만, 제3호에</u> 해당하는 경 우에는 <u>그 소송비용</u> 등을 받드

현행	개정안
1. ~ 2. (생략)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 4. (생략)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에서 쟁점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u>부서장</u> (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사유서(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대한 <u>소명 포함</u>) 2.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u>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u>	<u>시 지원하여야 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u>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u>」에 따른 <u>고양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로 한정한다</u>) 4. (현행과 같음) ② ----- ----- ----- ----- <u>부서의 장</u> ----- ----- ----- ----- --. 1. ----- ----- <u>소명을 포함한다</u> -----) 2. (현행과 같음) ③ ----- ----- <u>고양시소송심의위원회</u> -----.

현행	개정안
④ ~ ⑤ (생략) 제16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생략) 1. ~ 2. (생략) 3.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u>의한</u>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4. <u>확정일로부터</u> 7일 이내에 판결요지, 패소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제출 5. (생략) ② (생략) 제17조(임의변제)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판결문 <u>정본 1부, 등본 2부</u> 2. <u>판결확정증명서</u> 2부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u>사본 각 2부</u>(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u>위임장 2부</u>(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u>따른</u> ----- ----- 4. <u>확정일부터</u> ----- ----- ----- -----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임의변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u>정본</u> 2. <u>판결확정증명서</u> 3. ----- <u>사본</u> ----- ----- 4. <u>위임장</u>----- ----- 5. -----

현행	개정안
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u>사본</u>)2부	----- ----- ----- <u>사본</u>)
제18조(구상권 행사) ①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u>제기하되</u>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구상권 행사) ① ----- ----- ----- ----- <u>제기하되</u> , ----- ----- ----- ----- ----- ----- -----.
②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u>기타</u>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② ----- ----- <u>그 밖의</u> ----- ----- ----- ----- ----- -----.
제19조(비용회수의 주체 등) ① 소송총괄부서에서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송주관부서에서 <u>비용회수</u>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비용회수의 주체 등) ① ----- ----- ----- ----- <u>소송비용 회수업무</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 ~ 2. (생략) 3.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 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 사건에 <u>대하여는</u>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여 정리할 것 4. (생략)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u>12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u>위원장</u>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서의 소관 <u>실·국장</u>이 된다. ③ <u>위원</u>은 본청 <u>실장·국장</u>을 <u>당연직</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u>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u> 2. <u>고문변호사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u> ④ <u>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u>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1. ~ 2. (현행과 같음) 3. ----- ----- --- <u>대해서는</u> ----- ----- ----- ----- 4. (현행과 같음)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u>위원회의 위원장</u>----- ----- <u>실장·국장</u>-----. ③ <u>당연직</u> 위원은 본청 <u>실장·국장</u>으로 하고, <u>위촉직</u> 위원은 <u>고문변호사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u> <u><삭 제></u> ④ <u>위촉직</u>----- -----

현행	개정안
수 있다. 다만, 「<u>고양시 고문변 호사 운영 조례</u>」 제2조에 따른 임기가 <u>종료</u> 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u>부서장</u>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u>회의를 시작하고</u>,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단서 신설</u>> <<u>신 설</u>> ⑤ (생략) 제26조(수당 등) <u>시</u>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 ---- 「<u>고양시 고문변 호사 운영 조례</u>」 제2조----- ----- <u>종료된</u> ----- -----. ⑤ ----- ----- ---- <u>담당 부서의 장</u> ----.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개의(開議)하고</u>----- -----,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u>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등을 비공개할 수 있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6조(수당 등) <u>고양시</u>----- ----- 위원에게는 -----

현행	개정안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제27조(중요소송 사건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방법) ① (생략)	제27조(중요소송 사건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4. ----- --- <u>이바지하는</u>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가 <u>소송 사건</u> 과 관련하여 특정 변호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 등을 받아온 경우에는 같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 ----- <u>소송사건</u>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3] <u>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u>(제14조 관련) 1. 지원 및 환수의 기준 가. 민사소송의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나. 수사과정 또는 형사소송의 경우 심급별 11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한도로 지원한다. 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이 확정 또는 종결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라.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마.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등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다. 2. 지원 및 환수의 절차 가. 담당부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소송비용 등의 지원 또는 고문변호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나. 담당부서장은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호나목의 경우: 사건위임계약서 및 변호인 선임계 2) 제1호다목의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 접수증 또는 불기소처분 통지서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담당부서장은 공무원(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의 3급 이상 소속 상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라. 공무원이 제1호라목 및 바목에 따라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은 제23조에 따라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3] <u>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u>(제14조 관련) 1. 지원 및 환수의 기준 가. 민사소송의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나. 수사과정 또는 형사소송의 경우 심급별 11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한도로 지원한다. 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이 확정 또는 종결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라. 공무원이 <u>적극행정으로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u> 마.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등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다. 2. 지원 및 환수의 절차 가. 담당부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소송비용 등의 지원 또는 고문변호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나. 담당부서장은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호나목의 경우: 사건위임계약서 및 변호인 선임계 2) 제1호다목의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 접수증 또는 불기소처분 통지서 3) 제1호라목의 경우: <u>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관련 서류,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자료 등</u>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담당부서장은 공무원(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의 3급 이상 소속 상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라. 공무원이 제1호마목 및 바목에 따라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은 제23조에 따라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별지 제13서식]						[별지 제13서식]							
임 의 변 제 청 구 서						임 의 변 제 청 구 서							
(앞 면)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위청구인 등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위청구인 등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등 대리인		주 소					등 대리인		주 소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 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 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분		지방법원		고등법원		구분		지방법원		고등법원			
당사자명		원고명		인용액		당사자명		원고명		인용액			
계													
년 월 일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1. 판결문 정본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을 고양시가 지급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임의변제하는 것임에 불과함을 인정함.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을 고양시가 지급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임의변제하는 것임에 불과함을 인정함.							
※ 가집행선고부에 따른 임의변제의 경우 뒷면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가집행선고부에 따른 임의변제의 경우 뒷면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양시 공고 제2025 - 2247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공무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생일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함(안 제21조제12항).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행정지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031-8075-2173)

- 팩 스: 031-8075-490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이 경 희
	팀 장 성 명	행정지원팀장 장 주 민
	담 당 자 성명·연락처	배 성 윤 (031-8075-217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특별휴가) ① ~ ⑪ (생략) <u><신 설></u>	제21조(특별휴가) ① ~ ⑪ (현행과 같음) <u>⑫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u>